

#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61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지역 및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, 교육사업, 환경인증사업, 청정에너지 보급사업, 환경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가.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
나. 법인의 사업수행 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.

다. 법인의 정관, 임원, 이사회, 직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.

라. 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.

마. 시장은 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6조).

## 제정조례안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2,200,000천원

- 산출내역 : 별첨

##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7. 9. 7 ~ 2007. 9. 27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효율적인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가칭 안산에버그린환경 재단 설립 계획

#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경제·사회·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에버그린21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립)** 에버그린21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**제3조(재원조성 등)** 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
  2.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
  3. 기관·단체·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
  4. 그 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
2.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
3. 생태공원 등 환경관련시설 수탁운영
4.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
5.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6.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
7.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정관)** ① 법인은 정관에 「민법」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.

1. 직원에 관한 사항
2.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
3. 회계에 관한 사항
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5. 해산에 관한 사항

## 6. 공고에 관한 사항

### 7.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임원)**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 임원의 자격, 임면, 임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7조(이사회)**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둈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상임이사)** 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 상임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**제9조(직원)**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**제10조(수익사업)** 법인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제11조(회계연도)**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따른다.

**제12조(사업계획서 등)**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보고 및 검사)** 시장은 법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4조(공무원의 파견)** 시장은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**제15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**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.

**제16조(사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예산의 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에 따라 법인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환경관리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관리과장 박 강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환경기획담당 정 송자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 송자 (행정 2241)

#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1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10. 12.  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## 1. 수 정 이 유

- 환경재단설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 사업에 대하여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,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관련 항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 요 골 자

-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함.(안 제5조제2항)

# **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**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**

-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**

## 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5조(정관) ① 법인은 정관에 「민법」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5조(정관) ① ..... ..... .....</p> <p>1. ~ 7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